

의안번호	2216081
의 퇴 인	서영석의원
회 답 일	2026.6.4.
추계번호	26D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9명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억 4,300만원(연평균 6,900만원)으로 추계됨
-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증감은 추계에 포함되지 않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66	67	69	70	71	343	69

주: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증감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충원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의무분야 입영대상자는 의무장교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로 나뉘며, 의무장교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매년 신규로 충원되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¹⁾ 수가 증가하는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수는 감소가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증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관련 자료의 한계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편입 감소는 공중보건의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여 추가재정소요 감소가 예상됨
 - 반면, 최근 공중보건의 편입 수 감소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지)소에 민간의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는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해야 하는 민간 의사 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추가재정소요 증감요인이 있음
 -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할 민간 의사의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의사 증가 규모 및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공중보건의 편입 수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68호)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동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의무장교 신규충원 증가규모는 연간 388명으로 추정됨

[표 2] 신규 공중보건 의사 편입 현황

(2025.4월 기준, 단위: 명)

연 도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사
2020	1,309	742	201	366
2021	1,033	478	231	324
2022	1,048	511	206	331
2023	1,107	449	251	407
2024	709	249	185	275
2025	738	247	221	270

자료: 보건복지부

[표 3]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2025.4월 기준, 단위: 명)

연 도	계 (의과)	보건(지)소	병원선· 이동진료반	국·공립 병원	국가보건 기관	응급의료 기관 등	보건단체 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2020	3,499 (1,901)	3,036 (1,592)	28 (12)	200 (132)	45 (31)	93 (93)	4 (3)	93 (36)
2021	3,523 (1,862)	3,041 (1,561)	27 (11)	200 (131)	67 (32)	88 (87)	4 (3)	96 (37)
2022	3,365 (1,714)	2,901 (1,432)	24 (8)	195 (123)	61 (27)	85 (84)	4 (3)	95 (37)
2023	3,175 (1,432)	2,716 (1,174)	25 (6)	194 (108)	57 (22)	84 (84)	4 (3)	95 (35)
2024	2,852 (1,207)	2,414 (967)	30 (10)	183 (104)	56 (15)	77 (77)	4 (3)	88 (31)
2025	2,551 (945)	2,156 (747)	25 (7)	162 (85)	60 (18)	62 (62)	3 (2)	83 (24)

주: 표의 숫자는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안의 숫자는 의사 수입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 기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²⁾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로 함
 - 개정안 시행일을 2027년 초로 가정할 경우,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2.0	2.0

사전담의사의 경우 매년 3월에 입대하여 3주 교육 후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관 후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최초로 전역하게 되는 시점은 2029년 3월로 예상됨

- 또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기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적용 이후 임관되는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 시,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을 위해 임관시기가 3주씩 앞당겨져야 하지만, 현재 매년 3월에 입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추계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개정규정과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대상자의 입대가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에서는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의 단계적인 단축은 고려하지 않음³⁾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제34조제2항)

- 개정안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정원 유지를 위해 매년 신규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

3) 현재 매년 3월 1회에 한하여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입대하고 있어, 2027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2029년에 2026년 입대자와 2027년 입대자가 동시에 전역하도록 되어 있어 2029년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현행 신규충원 인력의 2배를 충원하고, 2030년에는 현행 신규충원 인력만큼 충원하는 등 격년마다 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변동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과정에서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2025년 기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정원은 169명⁴⁾으로, 현행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3년일 경우 향후 매년 56명씩 신규충원해야 하나, 개정안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경우 매년 신규충원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50% 확대한 85명으로 매년 29명씩 추가로 신규충원해야 함

[표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정원 및 신규충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원	154	154	155	156	169
신규충원	52	52	52	54	66

자료: 국방부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은 3주간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기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인당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9만 3,000원임

[표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2025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급식	피복	합계
단가	273	1,820	2,093

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정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교보재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방부

- 추계기간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군사훈련·교육시 급식 및 피복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 추정: 2029~2033년

(단위: 천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급식 및 피복	2,272	2,317	2,363	2,410	2,4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인당 군사훈련·교육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4) 경인청 제2검사장 증축(2025. 6.)으로 2025년 병역판정전담의사 정원이 169명으로 13명 증가함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추가 충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 2029~2033년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연평균
추가 충원 인원(명)	29	29	29	29	29	-	-
급식 및 피복 단가(천원)	2,272	2,317	2,363	2,410	2,458	-	-
소요 예산(백만원)	66	67	69	70	71	343	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9명에 대한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억 4,300만원(연평균 6,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66	67	69	70	71	343	69

주: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증감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시, 매년 충원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9명의 군사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신규충원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